

강원지방데이터청 공무직근로자(통계조사관)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강원지방데이터청에서는 공무직근로자(통계조사관) 신규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7.

강원지방데이터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부서	응시번호	성명	연락처 뒷번호	비고
원주사무소	1	김 * 윤	6 * * 6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 및 연락처 뒷번호의 앞자리와 끝자리만 표기

2. 예비합격자 명단

부서	순위	응시번호	성명	연락처 뒷번호	비고
원주사무소	1	11	박 * 영	2 * * 1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 및 연락처 뒷번호의 앞자리와 끝자리만 표기

※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3.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

○ 채용구분: 공무직근로자(통계조사관)

계약방법	채용예정일	근로조건	임금(호봉제)
근로계약 (만 60세 정년)	2026. 7. 1. (수습기간 3개월)	1주 40시간, 주5일 근무	- 기본급 1,961,650원(1호봉) - 정액급식비 140,000원 - 표본관리비 200,000원 * 법정수당 및 명절휴가비 별도 * 2026년 임금 기준

○ 수습기간 : 2026. 7. 1. ~ 2026. 9. 30.(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적격성 심사 후 정규 임용

※ 수습기간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공무직근로자 처우는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통계청 취업규칙』, 『통계청 임금협약서』 등을 따름

4. 담당업무

담당업무	세부내용
경상조사 및 연간·특별조사 전반	- 경제, 사회, 농어업 부문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근무부서 관할지역* 내 현장 조사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 관할지역* : 원주, 횡성 - 조사대상처(응답자)와의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 신규 조사대상처 설득 - 통계조사 자료수집,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 자료 입력 - 기타 조사 관련 지시사항 처리 등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2026. 6. 24.(수) 18:00까지
- 제출처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지역통계과 김 소 희	(우편번호 : 24233)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4층 지역통계과	033-258-3741

-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봉투 앞면 “채용서류 재중” 작성 요망

○ 제출서류 목록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1】
 -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2】
 - ③ 공정채용확인서 【붙임3】
 -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붙임4】
 - 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5】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중 취업 여부 확인용)
 - ⑦ 기본증명서 1부(상세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⑧ 최종학력증명서(인사기록카드 작성용)
 - ⑨ 사진(3*4) 1매 또는 파일(인사기록카드 작성용 및 공무원증 발급용)
 - ⑩ 본인 통장 사본 1부(보수 지급용)
- (⑧~⑩은 첫 출근일에 제출하여도 무방함)

※ 최종합격자만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지역통계과 김소희 (☎ 033-258-3741)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목록

채용구분	근무부서	성명	서명
공무직근로자(통계조사관)	원주사무소		(서명)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1】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	
3. 공정채용확인서【붙임3】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4】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 크리스트【붙임5】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이중취업여부 확인용)	
7. 기본증명서 1부(상세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8. 최종학력증명서(인사기록카드 작성용)	
9. 사진(3*4) 1매 또는 파일(인사기록카드 작성용 및 공무원증 발급용)	
10. 본인통장 사본 1부(보수 지급용)	

* 제출서류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후 함께 제출

** 등기우편 제출 시,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1】

(채용 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국가데이터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급여지급	채용 시 추가 수집되는 정보와 함께 퇴사 후 3년

* 계좌번호는 채용자에 한정하여 근로자 인사 업무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수 지급 등 의무이행을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근로자 채용 관리, 4대 사회보험 신고,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주민등록번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복지제공 등 인사 업무를 목적으로 채용자에 한정하여 수집·이용되며 입사지원자에게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4대 사회보험 신고 등 의무이행을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장애 종류 및 등급</u>	장애인고용 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u>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 등 의무이행을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대 이터지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붙임3】

공정채용확인서

국가데이터처에서는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채용예정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1-1번, 2번 작성 / (없을 경우) 1번, 2번 작성

1. 본인은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 있다. ☐ 없다.)

1-1.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 번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기타

2.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별, 소속, 직종, 채용일자, 채용방식, 통계청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직원 소속, 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절차 진행 및 향후 고용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 귀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국가데이터처의 공무원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제33조,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자격요건) ① 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33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제출 요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성 명

(서 명)

강원지방데이터처장 귀하

【붙임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